

산업안전보건법 벌칙조항 개정 안내

2006년 3. 2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9. 25 이후 발생한 사망재해에 대하여 사망재해조사결과 재해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 제1항 위반인 경우 반드시 벌칙조항(제66조의2)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관련규정

- 산안법 제23조(제1~제3항) 및 제24조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 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신설 2002. 12. 30>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06. 3. 24 신설>

석면해체 및 수중작업 근로자 건강보호가 강화된다 -노동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입법 예고

내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달리하여야 하고 모든 수중작업시 작업자가 흡입하는 공기의 질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9. 20일 밝혔다.

입법예고내용에 따르면, 석면함유 건축물을 해체 또는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 창문,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 등으로 밀폐하고, 실외인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 흡입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샤워실 등 위생설비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잠수작업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적용범위를 현행 수심 10m 이상의 수중작업에서 모든 수중작업으로 확대하였다. 잠수작업자가 수중에서 사용하는 공기의

질이 산소 농도 20~22%, 이산화탄소 농도 100ppm 이하 등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압축공기기준을 유지하도록 공기청정장치의 성능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오염물질 유입방지, 미생물 오염방지 등 사무실 공기관리 규정 적용범위를 현행 중앙공급식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실내공간에서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무실 공기관리 기준의 대상인자를 확대(4종→9종.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4종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이산화황, 오존, 석면 등 5종 추가)하여 사무실내에서 일정수준 이하(예:일산화탄소 100ppm, 이산화탄소 1,000ppm이하 등)로 유지토록 권고 기준화하였고, 사무실 공기측정·분석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청, 비정규직고용사업장 안전보건지도점검

서울남부지청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2005년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조치이행 여부, 위험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실태, 안전보건교육,

일반·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등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등 의법조치하기로 하였다. ☎